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0년12월2일(수) · 주간 제49호 · 통권 제1495호 ·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구독료 월3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2/ 2 통권 149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21세기 CEO, 과거는 버리자

2020년 종합소득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중소기업 창업대주주의 가족간 지분증여로 10년간 배당종합소득세 감소효과(차등배당의 중복과세회피 위해 지분분산전략 선택)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 2020년 종합소득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코로나 긴급재난으로 올해 매출감소, 이익의 손실 · 적자전환된 가업의 지분증여·상속·승계세금 등 >

개념, 구분	정상적 이익인 경우	이익의 적자전환위기상태
기업가치, 계산 산식	순자산가치×40%+수익가치×60%)	계속결손이면 순자산가치×100%
수익가치계산산식	(3년전 손익×1+2년전 손익×2+1년전 손익×3)×1/6	좌동
기업가치평가사례 (순자산가치 동일가정)	매출 60억원, 이익율 10% (6억×1+6억×2+6억×3)×1/6÷10%=60억원	2018, 19년 이익율 10% 좌동, 2020년은 0(6억×1+6억×2+0×3)×1/6÷10%=30억원
일반증여(지분 50%)	1억×10%+4억×20%+5억×30%+20억×40%=10.4억원	1억×10%+4억×20%+5억×30%+5억×40%=4.4억원
가업증여(지분 50%)	조특법 30조의6 요건 충족(사람, 사업 유지조건 등) (30억-5억)×10%=2.5억원	조특법 요건 유지(좌동) (15억-5억)×10%=1억원
일반상속(나머지 50%) (선증여 후 10년 지남)	30억-5억(기초)-5억(배우자)=20억 : 1억×10%+4억×20%+5억×30%+10억×40%=6.4억	• 사망시점에 이익율 10% 회복하면 나머지 50% 기업가치는 30억원, 상속세는 좌동 6.4억원 • 적자상황이면 15억-5억-5억=5억(1억×10%+4억×20%=9천만원)
가업상속(가업증여합산)	① 가업상속조건 유지하면 : 10년 이상 100억 공제로 상속세없음 ② 가업상속 아니면 30억-10억=20억원이면 상속세는 6.4억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5 호 / 주간 49호 2020. 12. 2.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코로나 긴급재난으로 올해 매출감소, 이익의 손실 · 적자전환된 가업의 지분증여 · 상속 · 승계세금 등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중소기업 창업대주주의 가족간 지분증여로 10년간 배당종합소득세 감소효과(차등배당의 중복과세회피 위해 지분분산전략 선택)	2
C E O 에 세 이	21세기 CEO, 과거는 버리자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자산이 처분될때 반대 추인함 - 사내 바자회관련 비용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함 - 원천징수는 지급기준이지만 실제 근무기간을 귀속으로 반영하여야 함	6
	-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연금저축 vs 정기적금 세액공제 비교 - 첫 차 사면 내야 하는 세금	11 12
직 장 인 S u r v i v a l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르는 자기계발과정	13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128, 2020.03.26)	14
	-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인-1670, 2020.05.18)	15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올해 국세청 종부세 고지세액 4.2조원…9200억원 늘었다	16
마케팅 Tax consulting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함	14
세 무 정 보	-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17
	-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31
노 무 정 보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42
	-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4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중소기업 창업대주주의 가족간 지분증여로 10년간 배당종합소득세 감소효과 (차등배당의 중복과세회피 위해 지분분산전략 선택)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상황 : 매년 순이익 10억원 → 기업가치평가액 100억원, 당초불입자본금 5억원(매년 전액 배당 가정)

개념구분과 법인지분	단독지분의 종합소득세	자녀 2명에게 증여와 배우자 증여로 인한 세금
① 설립시기 : 창업자 100% 지분분산 전 10억 배당시 종합소득	기존연봉 1억 초과로 최소한계세율 35% 시작, 2억원×38%+2억×40%+6억×42%=4.08×1.1=4.5억	배우자와 자녀의 합법적 소득원천이며, 자금출처 조사는 없음
② 자녀 11%, 배우자 11%로 분산 증여세 한계세율 20%인 5억원까지 지분분산 증여세	대주주 단독지분 100%가 78%로 내려감	① 자녀증여 5.5억원-5천만원=5억 • 증여세 1억×10%+4억×20%=9천만원×2인 = 1.8억원 • 분산지분율 5.5%×2인 = 11% ② 배우자증여 11억-6억=5억 • 증여세 9천만원 • 분산지분율 11% ③ 가족 총 증여세는 2.7억원

③ 지분분산 이후 10억배당소득세	10억×78%=7.8억 : 2억 × 38% + 2억 × 40%+3.8억×42%=3.156×1.1≒약 3.47억원	① 자녀 1인당 배당소득 : 5500만원 • 종소세 : 1200×6%+3400×15%+900×24%=798만원×1.1≒880만원×2인 = 1760만원 ② 배우자 배당액 11% = 1억1천만원 • 종소세 : 1200×6%+3400×15%+4200×24%+2200×35%=2360만원×1.1≒2600만원 ③ 연간 배당소득세 총계는 3.47억+1760만원+2600만원≒약 3.9억원
④ 지분분산 전과 지분분산후 10년 경영 가정	분산 전 10년간 총배당세금 4.5억×10년=45억원	당초 증여세 2.7억원+배당세 3.9억원×10년=41.7억원 10년만 계산해도 지분분산으로 인한 세금감소가 3.3억원 20년 운영이라면 지분분산으로 인한 세금감소가 최소 9.3억원임
⑤ 가업은퇴 종결시 지분 100% 타인양도의 세금	가치 100억 - 자본금 5억 = 95억 : 3억원까지×20%+초과 92억×25%=23.6억×1.1≒약 26억원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녀 등 특수관계자의 분산지분을 모두 합산하므로 경영권 양도시의 지분분산 세금감소 효과는 없음

21세기 CEO, 과거는 버리자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미국 제일의 거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해맑은 웃음을 짓는 '시스터 보이'같이 보인다. 반면에 정경유착, 탈법 등의 혐의로 몇 번에 걸쳐 뉴스와 청문회 등 TV 중계를 타면서 알려진, 검정 자동차에서 느릿느릿 내리는 모습, 검정코트에 길게 늘어뜨린 흰 목도리의 노인, 키는 작지만 단단한 거구의 괴력을 느끼게 하는 한보의 총회장이란 명칭의 색다른 직함의 경영자.

구치소에서 전국의 TV 생중계가 되는 국회 청문회에까지 나와서도 흰 마스크를 낀 채 '모르쇠'를 일관하던 남자. 그러면서도 전문경영인인 임원을 가리켜 당당히 '머슴'이라고 일갈하는 오너 경영인.

뇌물을 받아먹은 권력과 은행이 받아먹은 만큼 대출을 안해 주어서 망했다고 주장하던 한국식 기업인. 뇌물 케이크 상자속의 수표에서 사과 박스 속의 돈다발로 바꿔놓은 장본인. 권력을 끼고 은행 돈을 대출 받아 기업의 설비와, 덩치를 키우고, 이어 이것을 담보 삼아 더 큰 대출을 요청한다. 그만큼 뇌물도 커진다. 상관 고리의 악순환이다.

또한 직업분류표에도 없는 직업이지만 돈세탁업이 엄연히 존재했고 또 흥청거리며 흥행했다고 역사는 기록했다.

필자는 과거 한국의 탐욕스런 사장의 이미지와 미래의 경영전문가 CEO의 이미지를 대비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0~70년대 고바우 만화가 인기였다. 사장은 뚱뚱하고 탐욕스럽고 심술이 많다. 사원들에게 보너스조차 주기 아까워했다. 탈세를 절세라 주장했다. 얼마나 남의 돈을 잘 끌어들여서 펑펑 잘 쓰느냐가 사내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였다. 은행은 유능한(?) 사업가의 먹이처럼 되어 갔다. 과장해서 말하며 도둑놈, 사기꾼, 또는 뻔뻔스런 범법자 이미지가 사장 이미

지가 아니었나 반성해 보고 싶다.

빌 게이츠는 어떤가? 범법이나 탐욕과는 애시당초 다르다. 명문 대학 하버드를 다니던 수재. 미래 정보화시대의 도래을 예감하고 허름한 차고에서 친구와 함께 창업을 한 용기 있는 벤처기업가. 그리고 끊임없이 창조적 부가가치를 현대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성공을 일궈낸 테크놀러지의 경영의 귀재. 현대 문명을 뛰어넘어 미래를 예언하면서 국제적 식견으로 지적 기업(知的 企業)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지도자. 그러면서도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캐주얼을 즐겨 입는 젊고 맑은 미소의 청부(淸富). 자선기관에 거액을 쾌척하며 더불어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신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CEO 이미지가 아닌가! 우리는 자녀교육부터 도둑놈을 조장했는지 모르겠다. 남의 것도 잘 빼앗아 먹고 덩치 좋으면 장군감, 사장될 녀석이라고 하던 시절의 부모교육이 부끄럽다. 분유 잘 먹어 몸무게 많이 나가는 비만아를 '우량아'라고 상까지 주던 슬프고 우스꽝스런 60년대의 기업 이벤트가 인기를 모은바 있다. 궁핍하던 시절의 우화 같은 사건들을 돌이키다 보면 씁쓸하게 동정이 가기도 한다.

이렇게 반성할 창피한 과거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 모른다.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자산이 처분될때 반대 추인함

Q 기업의 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경우 이후 사업에서 유보추인이 있어야 하나
손상처리한 영업권은 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추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처분은 '유보'가 맞는지? '기타'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매각)하거나 자산이 소멸하는 때에 반대 추인됩니다.

사내 바자회관련 비용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함

Q 회사에서 지역 양로원 방운 후원금 전달 코자 사내 바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과정의 비용이 발생 하였는데 발생 비용을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준비직원 식비 , 장식품 구입 등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A 법인의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은 지출목적에 따라 회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내 바자회관련 비용이라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초보자코너

원천징수는 지급기준이지만 실제 근무기간을 귀속으로 반영하여야 함

Q 1. 현재 회사에 아르바이트 및 외주용역비를 지급일과 신고일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아르바이트 7월급여(실제 지급일 : 08월 10일)

1.2 외주용역비 7월분 지급(실제 지급일 : 08월 10일)
→ 두 지급분 모두 2020년 07월귀속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2. 외주용역비 지급일을 08월 20일로 변경후 2020년 08월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3. 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소득으로 신고되어야하는 기간은 어느 기간인가요?
Ex) 실제 지급기준 : 2020.07.01 ~ 2020.07.30 = 2020년 07월귀속
실제 지급기준 : 2020.07.01 ~ 2020.08.10 = 2020년 07월귀속

A 귀속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7월에 근무한 대가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7월귀속 8월지급으로, 8월에 근무한 대가를 8월에 지급하면 8월귀속 8월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귀속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7월1일부터~8월10일까지의 근무분을 지급하는 경우는 귀속월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Q 강풍으로 인해 회사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직원차량이 일부 파손되어 회사비용으로 직원차량을 수리해주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 수리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8인용 이하 승용자동차는 비업무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자산에 있어 가치의 감소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손상과 변색 등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건물 · 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은 실제 사용과 시간 경과에 의해서 가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유행에 뒤지거나 비효율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산의 진부화라고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근래에는 자산이 진부화되는 빈도수가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예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① 유형자산을 10만원에 취득시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000	대) 현 금	100,000

②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6만원이 된 경우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40,000	대) 감액손실누계액	40,000

※ 감액손실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회수가능가액

경리인코너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바, 기업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유보 처분하였다가 감액손실이 환입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유보처분된 금액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도 천재 · 지변 ·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계상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게 된다.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많은 사람들이 폐기와 처분에 대해 "폐기처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폐기 및 처분"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상 · 회계상의 처리방법도 다르다.

즉, '폐기'라 함은 해당 유형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내부에 해당 유형 자산을 소지한 상태이므로, 추후 매각 등의 경우에 대비해 비망가액을 남기는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되어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중 비망가액(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폐기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9,999,000
유형자산폐기손실	1,999,000	(비망가액 1천원 남기고 장부에서 없앰)	

유형자산을 폐기,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취득원가, 충당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추후 해당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시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유형자산이 진부화 되어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해당 자산을 유 · 무상으로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폐기와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와, ② 폐기되어 장부상 비망가액만 남겨져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유형자산의 폐기와 똑같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데 이때에는 비망가액은 남기지 않는다.

또한 폐기나 처분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익은 폐기손실, 처분손실 등의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물론, 유형자산의 처분이나 영구적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도 자산의 처분일이나 영구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례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처분(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000			

[사례2]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1백만원에 매각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사례3] 이미 폐기되어 비망가액만 남아 있는 자산의 소각(폐기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대) 유형자산	1,000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연금저축 vs 정기적금 세액공제 비교

월 불입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13.2%(지방세 포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16.5%(지방세 포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년 만기 정기적금 연 2% / 일반과세 가정 시 세후 이자
10만원	연 최대 15만8000원	연 최대 19만8000원	1만998원
30만원	연 최대 47만5200원	연 최대 59만4000원	3만2994원
60만원	연 최대 92만4000원	연 최대 115만5000원	6만5988원

화 종부세 세율 개정(단위 : %, 2021년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억~6억원	0.7	0.8		0.9	1.6	
6억~12억원	1.0	1.2		1.3	2.2	
12억~50억원	1.4	1.6		1.8	3.6	
50억~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첫 차 사면 내야 하는 세금

구분	세목	내용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차량 가격에 포함됨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 등록시	취득세	차량 등록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 차량 가격에 불포함
	공채매입비(준조세)	세금은 아니나 차량 등록시 내야하는 비용. 차량 가격에 불포함
차량 보유시	자동차세	차량을 보유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 포함돼 함께 납부되는 세금
차량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유비에 포함된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국산차 ·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금부담 비교

국산차		수입차	
제조장 반출시	5633원	수입시	4080만원(관세 포함)
		개별소비세	204만원
		교육세	61만원
개별소비세	282만원	부가가치	453만원
교육세	85만원	영업마진 등	약 1220만원 (수입가 대비 30% 가정)
판매가격	6000만원	판매가격	60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매입세액공제 435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367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265만원

* 2019년 수입차 대당 평균가격 6000만원을 판매가로 가정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르는 자기계발과정

'혁신(革新)'의 '革'자는 '가죽 혁'자이며, '新'은 '새로울 신'자입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인은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선으로는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가진것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자기계발에 임해야합니다.

1인기업으로 시작해 초우량기업이 된 '아마존'의 혁신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1994년 세계최초의 인터넷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 옥션/지마켓의 최대주주인 '이베이' 두 회사는 인터넷에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베이'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반면, '아마존'은 매출의 14%를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과감한 행보로 e-book(킨들), 음악다운로드,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를 위협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한 때 몰락의 예고까지 받았던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인터넷월마트'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분기 기준으로 전통적인 서적/음반 매출은 정체상태인반면, 전자, 잡화 매출은 전분기 대비 35% 성장하였습니다.여기에 신발의류회사 '자포스'인수(아마존의 물류시스템과 시너지 발생해 신발 의류산업 확장에 성공), 시애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배송/당일 익일 배송 서비스, 사전에 인프라 시설투자로 연평균 37%이상 성장하고 있는 킨들(e-book), 판매자를 위한 물류지원 서비스 FBA(Fulfillment by Amazon ; 판매자가 아마존 물류창고에 물품을 보내면 재고관리, 포장, 배송, 구매자 지원 등 모든 역할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델 등이 눈독들이는 클라우팅 컴퓨팅 시장 선점 등 아마존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델로 출발한 '이베이'와 '아마존', '야후'와 '구글', 이들의 차이는 끊임없는 자기혁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형태의 '자기계발'로는 부족합니다. 자기계발은 '자기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1인기업의 대표적 사업중 하나인 '컨설팅'은 상위 3%에게만 일이 집중됩니다. 3%안에 들기 위해서는 자기계발보다는 자기혁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사전법령법인-203, 2020.04.20

▌질 의

◦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익금에산입할 금액

◦ 2) 상기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토지 취득비용 +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 신

1)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감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음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하 '신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128, 2020.03.26

▌질 의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3% vs 1%)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인-1670, 2020.05.18

▌질 의

○ 개인이 보유 중인 B법인의 주식을 100% 출자하고 있는 A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333, 2017.12.0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7, 2010.10.25.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의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260, 2020.05.19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제1호 적용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갑설〉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을설〉 분할후 사업영위기간만 계산

▌회 신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 국세청 종부세 고지세액 4.2조원… 92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고려할 때 최종 납부될 세금은 3.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금액은 4조268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000명(25.0%), 금액은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에서 약 10% 줄어든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수는 3.8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1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액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나눠 낼 세금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등을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을 통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마스크 수출경쟁력, FTA로 높이세요"

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FTA 활용에 궁금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2020년 6급 이하 1460명 승진인사 단행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이다.

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세무직 1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 21명(6급 5명, 7급 11명, 8급 5명), 시설직 등 3명(6급 3명) 등이다.

올해 승진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세제 확대 시행,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진인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번 승진 심사 중 일반 승진 대상자는 '근무 성적 평정 및 승진 관리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

특별 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고려했다. 이외 대상자의 공적과 자질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0. 11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 25.0%), 9,216억 원(+ 27.5%)이 증가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올해부터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 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 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12. 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천명, 억원)

구 분	'18년	'19년(전년대비 증가율)	'20년(전년대비 증가율)
고지인원	466	595 (27.7%)	744 (25.0%)
고지세액	21,148	33,471 (58.3%)	42,687 (27.5%)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 12. 15.)으로부터 6개월('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21.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분납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재산세제 세무서류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공인인증 필요)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4.(월)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 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징수유예 신청 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 납부기한연장 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징수유예 신청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

4.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분 과세물건 조회

◎ '20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시 공인인증 필요)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 ①공시가격 조회, ②조정대상지역 및 ③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④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하기

○ 동 프로그램은 공시가격1), 조정대상지역2)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 · 입력하면 '20년, '21년 및 '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연결되며, 현재 '20년 기준까지 공시가격이 제공되고 있음

2) '20. 6.1. 기준으로 제공되며 '21. 6.1. 기준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추가지정 및 해제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종합부동산세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항 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20년 귀속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공 제 액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 원**	**80억 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			

세 율(%)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 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일반	3주택등*				
3억 원 이하	0.5%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0.9%				
12억 원 이하	1.0%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1.8%				
94억 원 이하	2.0%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3.2%				

* 3주택등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결정세액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납 가능(6개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문.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이나 ID · 비밀번호 없이 이용가능

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 · 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함.

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문.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

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함.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대구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서울 주택 1호(부부 공동명의) · 세종 주택 1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사례 3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문.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문.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정대상지역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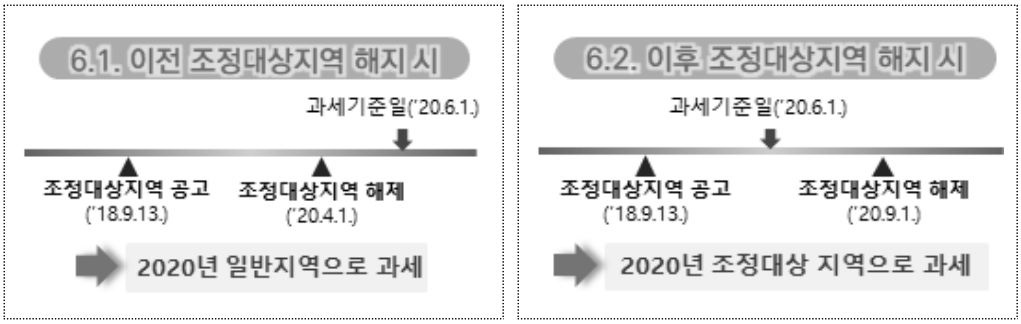

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문.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문.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문. 12.15.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문.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

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참고 3 조정대상지역 현황('20. 6. 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 다산동, 별내동 3)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 상현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18. 12. 31.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 2. 21.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역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참고 4. '19년~'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 아래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모두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납세자의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익년 연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아래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①)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②)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증감{(②-①)/①}	25.0%	27.5%	28.3%	42.9%	6.1%	19.4%	10.0%	16.2%

* 과세유형별 중복인원 '19년 1.7만명, '20년 2.1만명 제외

◎ 전국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19년		'20년		증가율	
	인원 (①)	세액 (②)	인원 (③)	세액 (④)	인원 {(③-①)/①}	세액 {(④-②)/②}
합계	595	33,471	744	42,687	25.0%	27.5%
서울	315	19,951	410	26,107	30.2%	30.9%
인천	14	892	17	985	21.4%	10.4%
경기	139	4,963	170	5,950	22.3%	19.9%
강원	7	361	8	453	14.3%	25.5%
대전	9	1,038	12	1,335	33.3%	28.6%
충북	5	191	6	233	20.0%	22.0%
충남	9	393	11	508	22.2%	29.3%
세종	3	67	4	105	33.3%	56.7%
광주	7	262	8	335	14.3%	27.9%
전북	6	189	6	238	0.0%	25.9%
전남	4	574	5	632	25.0%	10.1%
대구	21	495	23	656	9.5%	32.5%
경북	9	885	10	878	11.1%	-0.8%

부산	23	1,233	28	1,361	21.7%	10.4%
울산	6	243	6	258	0.0%	6.2%
경남	11	1,258	12	1,742	9.1%	38.5%
제주	7	476	8	911	14.3%	91.4%

◎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19년		'20년		증가율	
	인원 (①)	세액 (②)	인원 (③)	세액 (④)	인원 (③/①)	세액 (④/②)
합계	520	12,698	667	18,148	28.3%	42.9%
서울	298	8,297	393	11,868	31.9%	43.0%
인천	11	200	13	242	18.2%	21.0%
경기	117	1,877	147	2,606	25.6%	38.8%
강원	4	74	6	107	50.0%	44.6%
대전	7	89	11	178	57.1%	100.0%
충북	4	62	5	80	25.0%	29.0%
충남	6	106	7	146	16.7%	37.7%
세종	3	27	4	44	33.3%	63.0%
광주	5	144	7	163	40.0%	13.2%
전북	4	57	4	78	0.0%	36.8%
전남	3	61	4	78	33.3%	27.9%
대구	18	235	20	335	11.1%	42.6%
경북	6	116	6	125	0.0%	7.8%
부산	18	447	23	454	27.8%	1.6%
울산	4	91	4	63	0.0%	-30.8%
경남	7	672	8	1,089	14.3%	62.1%
제주	5	143	5	492	0.0%	244.1%

참고 5.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 개인 ·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부담 차이 발생 사례

◎ 공시가격이 38억 4천만 원인 경우

(천원)

구 분	A씨	B씨
연 령	71년생	35년생
보유기간	5년 미만	15년 이상
세액공제율	-	70%
종합부동산세액	20,584	7,048

◎ 공시가격이 16억 4천 7백만 원인 경우

(천원)

구 분	C씨	D씨
연 령	81년생	45년생
보유기간	5년 미만	15년 이상
세액공제율	-	70%
종합부동산세액	2,709	812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국세청, 2020. 11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1. 16.(월)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하여 ①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②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참고] 판례 입장 :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불가

– 다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발제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 우리 법령과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종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 (완화)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발제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1. 16.(월)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지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도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공평과세의 요청을 아우르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세관청의 노력과 더불어 중복 세무조사 제한 등 조사행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고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 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주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역설하였습니다.

– 오늘 포럼의 주제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의 적절하며, 모든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초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

◉ 그간 국세행정포럼은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학계 및 조세전문가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납세자와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년도 국세행정포럼은 최초로 IT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포럼(Online Foru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포럼 진행과정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한편,

* 일반 국민과 납세자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포럼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

○ 경제 · 시민 · 학술단체 관계자부터 모범납세자 및 국세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오신 총 2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포럼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LED 화면(가로5×세로4)을 통해 실시간 연결

◉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온라인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가운데 국세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공론의 장(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1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제 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개정경과 분석

○ (도입 이전) '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 외에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증여의제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금융기법 · 자본거래 등을 활용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도입 이후) 이러한 변칙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03년 도입되었습니다.

–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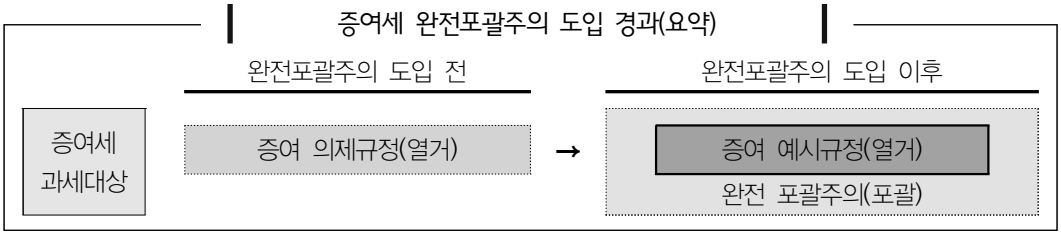

◉ 예시규정 외 증여행위 과세 관련 판례의 태도

○ (소극적 입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르면 부의 무상이전행위가 증여예시규정 범위 밖에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겠지만,

– '15년 대법원은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외된 행위가 증여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3266).

◉ '15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한 완전포괄주의 보완

○ (과세대상 명확화) '15년 1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화 하였습니다(상증세법 §4①).

– ①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② 증여예시규정 또는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③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 (판례입장 불변) 개정 이후에도 판례는 증여예시규정 밖 변칙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능성 검토

◈ 증여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현행 상증세법 따른 증여세 과세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예) 개별 예시규정이 특정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경우

○ (일반규정 과세)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2.6호)를 충족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31)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32) 규정을 결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그동안의 법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되도록 증여이익 계산방법, 증여시기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적 실질 과세)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현행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경제적 실질의 유사 여부는 기존에 형성된 세법상 실질 판단기준* 뿐 아니라 법령의 취지, 편법증여의 과세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실질과세원칙 → ①조세회피 목적, ②합리적 이유, ③위험부담 가능성 등 검토

◉ 구체적 사례 분석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경제적 실질 유사 여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 → 증여세 과세

○ (과세긍정론, 조세심판원) 쟁점 사안은 특수관계의 존부(存否)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예시규정과 매우 유사하며,

– '15년 상증세법 개정 이전에도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해왔던 만큼 개정 이후에도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부정론, 1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으므로,

-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의 취득에까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결: 제한적 과세) 조세회피목적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나아갈 방향

○ (포괄주의 적극 적용) 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의적 과세 방지) 다만,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권 행사로 이어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 (예) 비특수관계인간 법인자본증감 이익 증여의제, 재산가치 증가이익 과세대상 명확화 등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발제 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정의 및 중복 세무조사 관련 법령

○ (개요) '96년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가 도입된 이래 세무조사 절차 통제를 위한 다음의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정의)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제2조 제21호).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제81조4 제2항).

◉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의 태도

○ (권익보호 강조) 우리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

- ▸ 현장확인도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임(대법원 2014두8360)
- ▸ 재조사 허용은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대법원 2010두6083)

◉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

○ (합리적 조화 모색) 현행 법령·판례의 태도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 고의적 탈세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커지는 등 공평과세 구현의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긴요합니다.

* (예) 신고내용 확인 시 고의로 불성실 대응 후, 추후 세무조사에서 중복조사라고 주장

◉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 행정조사 절차와 비교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태도 >

○ (개요)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세무조사 방식에 대하여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복 세무조사 허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❶ (미국) 세무조사* 방법은 크게 소환조사(office examination)와 현장조사(field examination)로 구분되며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됩니다.

*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단순 납세자 접촉은 명시적 제외

–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조사"가 아닌 경우 허용되며(IRC §7605(b)), 대법원은 신고서 사기(fraud) 여부 판단을 위해 납세자 장부정보가 필요했던 경우 해당 조사는 불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United States v. Powell, 379 U.S. 48 (1964)

❷ (일본) 지난 '11년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국세통칙법」에 마련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최초 조사 이후 해당 조사관이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통칙법 §74의 11, '15년 도입).

❸ (독일)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외부세무조사(Außenpruefung)는 범위가 넓고 강도가 세며,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신고검증과 구분됩니다.

-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통칙법(AO) 규정을 준용하여 중복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❹ (영국) 세무조사(Investigation)는 조세회피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장부상 오류나 세액계산상 잘못 등을 서류에 의해 검토하는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1차 조사 종료 당시 세무공무원이 소득누락 등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 우리나라 행정조사 절차와의 비교 >

○ (일반 행정조사) 동일 대상자 ·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15①).

○ (공정거래조사) 조사권에 대한 남용금지 규정(공정거래법 §50의2)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재조사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필요한 입법 개선사항

◈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평과세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다음의 입법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 (① '세무조사' 범위 명확화)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현장확인과 같은 단순 사실확인 행위와 혼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특정한 매출사실 확인,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 및 설명 행위, 납세자 단순접촉 등

○ (② '재조사' 허용사유 완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상당히 엄격하여 공평과세 원칙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그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조사를 허용하여 왔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부분조사 사유 확대) 통합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무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세무조사 실시(국세기본법§ 81의11)

– 세무조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분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등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의 개념 및 성실신고 지원제도 현황

○ (영세납세자 개념) 현행 우리 조세법령에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장부기장, 세금신고 등에서 일정한 세법상·세정상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소규모사업자** 등을 영세납세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별 일정금액(7,500만 원~3억 원) 미만
· 소규모사업자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 (지원제도 현황)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2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세정측면에서도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행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주요 정책 현황 |

구분	지 원 제 도	내 용
제도적 측면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 시 20% 세액공제
	단순경비율	· 일정한 영세납세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높은 경비율 적용
행정적 측면	영세납세자지원단	· 나눔세무·회계사가 무료 세무상담, 창업·폐업 멘토링 등 제공
	신고창구 운영	· 영세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 설치

◉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 (신고도움 필요성) 세무조력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 (맞춤형 지원부족)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등 지원제도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신고대

행 서비스로 인식·운영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IT기술을 활용한 신고지원, 세무 상담지원 등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주체(정부·민간), 방식(대행·지도), 기간(주말운영) 등 운영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미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VITA) 및 고령자 조세상담(T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과세연도에 3.5백만 건 이상의 소득신고를 조력하였습니다.

* 소규모 납세자: 연간소득 56천 달러 미만 납세자, 장애인 또는 영어 구사 미흡자

– 아울러,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설치한 지역상담소를 늦은 오후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일본) 세무서 및 외부 지방합동청사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서도 자체 또는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신고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에도 신고서 접수·상담을 실시하며, '19년 총 29만 건의 소득세 신고를 지원

– 다만, 신고창구 지원범위를 신고서 작성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서 작성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영국)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세액을 산정해 주는 간소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세액산정 및 서면 송부 → (납세자) 적정성 판단 및 세액 납부 → 신고·납부 완료

○ (프랑스) 상업·공예 등 소규모 사업자(micro-entrepreneur)에 대하여 ①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추계신고 허용, ②원천징수여부 선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고방법 안내에 그치고 이용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 영세납세자 신고지원 제도 개선 방안

< 신고창구 운영방법 개선 >

○ (이용대상 한정) 창구 이용대상을 영세납세자, 고령자 등으로 제한*하고 국세청의 신고안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용대상을 일정 수준 소득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훈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

○ (이용편의 확대) 신고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창구를 대규모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대기인 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 맞춤형 도움정보 제공 >

○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현재의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메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사전적 안내 · 교육) 세부 업종별 · 규모별로 신고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법적 개선방안 >

○ (세액 자동확정 도입)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 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모두채움 서비스가 이와 유사하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예: 공제정보 전년 동일)

○ (신고대리 공제 확대) 신고납세 원칙 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 · 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2020. 11

◉ 오늘(11.19.) 국회 본회의에서 ①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③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 6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융자 확대는 공포일)

◉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허용

○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 해당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기금 해산이 가능해짐

–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

○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근거 마련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

<4>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

○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①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②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방법에 따라 탈퇴 가능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5>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 신설

○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기존)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고 13개 직종 약 8만명 →
(개정) 전체 특고 약 200만명('18년 KLI 추계) +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1.2만명('20.5월말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시행: 체당금 지급범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규정은 공포일, 그 외 공포 후 6개월)

<1>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

○ 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설

○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3> 체당금 수급계좌에 대한 보호

○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신청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기준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 등

<2>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 신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3> 코로나19 등 감염병 근로자 산재신청 신속 처리

○ 코로나19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신청 근로자의 동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1> 신고제도 합리화

○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 개선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문제를 개선하였다.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 고용노동부, 2020. 11

◉ 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 기업부담 정도,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과,

* (추진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연 12% 수준으로 인하 ('19.6월 시행)

○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 · 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고, '21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이를 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법」 제32조의2)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 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20일 (금)	11월 23일 (월)	11월 24일 (화)	11월 25일 (수)	11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112.20	1114.20	1112.60	1111.20	1107.20
일 본 엔 (JPY)	1071.54	1072.84	1064.49	1063.09	1060.28
영 국 파 운 드 (GBP)	1473.61	1481.89	1482.65	1484.23	1481.71
캐 나 다 달 러 (CAD)	850.37	851.22	850.64	855.10	851.36
홍 콩 달 러 (HKD)	143.45	143.73	143.52	143.35	142.85
위 안 화 (CNH)	169.73	169.51	169.69	169.01	168.35
유 로 화 (EUR)	1320.24	1321.33	1317.37	1321.49	1319.39
호 주 달 러 (AUD)	808.85	814.26	811.03	817.84	815.40
싱 가 폴 달 러 (SGD)	826.70	829.30	827.89	828.11	826.55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71.24	272.25	272.00	271.85	270.87